

제 2418호
2015. 12. 2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107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제2015-108호 :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3
제2015-109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5
제2015-110호 :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8
● 공 고	
제2015-880호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12
제2015-881호 :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15
제2015-889호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19
제2015-8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37-1의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5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37-1	2010.06.28.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5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37-2	2010.06.28.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8호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04호(1976.07.14)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05.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9호(2010.12.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68호(2012.12.27)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1-39호(2011.06.29)로 사업시행 인가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3-76호(2013.8.21)로 변경인가된 우리구 장교동 22-4번지 일원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3)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원

다. 정비구역의 면적 : 기정 -1,979.0㎡ (대지 1,806.8㎡, 정비기반시설 172.2㎡)

변경 -1,974.9㎡ (대지 1,807.0㎡, 정비기반시설 167.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장교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용덕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서관 10층(수하동)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5년 12월 23일

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층) (지상/지하)	높이 (m)	용 도	비 고
기정	1,806.8	1,051.96	58.22	25,240.46	1,046.57	25/5	95.00	숙박시설	
변경	1,807.0	1,052.33	58.24	25,333.62	1,046.36	25/5	94.95	숙박시설 (관광호텔, 근린생활시설)	확정측량 결과반영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구분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 명	주 소	토지(㎡)	건물(㎡)	용도	
기정	장교프로젝트 금융투자(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서관 10층(수하동)	989.15	13,818.20	숙박시설	
변경	장교프로젝트 금융투자(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서관 10층(수하동)	989.26	13,869.20	숙박시설	

나) 보류지 시설 : 대상 없음

다) 체비지 시설

- 지정 : 토지 817.65㎡, 건물 11,422.26㎡(숙박시설)

- 변경 : 토지 817.74㎡, 건물 11,464.42㎡(숙박시설)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행정청에 무상귀속)(확정측량결과 반영)

시설명	기 정				확정측량결과			비고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도로 (광로 3-8)	장교동 22-6	대	236.0	28.6	장교동 74-1	도로	91.0	
	장교동 22-16	대	115.0	0.2				
	장교동 22-17	대	45.6	15.3				
	장교동 22-18	대	163.6	23.3				
	장교동 22-19	대	37.1	28.0				
	소 계			95.4			91.0	
도로 (소로 2-1)	장교동 22-11	대	106.1	27.2	장교동 74-2	도로	76.9	
	장교동 22-23	대	347.1	49.6				
	소계			76.8			76.9	
계	7필지			172.2	2필지		167.9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4)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기 철거완료

5) 변경사유 : 2015.12.02.자로 공사완료 고시되어 대지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변경

사.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 - 10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호(2015.10.1.)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2-8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6-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20 일대 / 1,536.2㎡
4. 사업시행자
 - 성명 : (주)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6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5년 12월 23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8. 건축계획

대지면적 (㎡)	층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용도	비고
1,394.90	지하3층/ 지상15층	11,773.53	49.44(고층) 65.16(저층)	699.91	62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 시설	도로	98	도로	48.5	(주)에이치투디앤아이	사업시행자, 신설기반시설 전부

10. 존치 기반시설

구분	종류	규모(㎡)	비고
정비기반시설	소(국)2-6도로	92.8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하게 포장

11.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92)에 비치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0.03.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축물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 사용	계			138.9	138.9														
수용 / 사용	1	초동 40-5	대	76.1	76.1	대	일반상업지역 종신푼지관리지구	하우포	강남구 역삼동 713-7 개나리APT 31동 603호	점포 / 철근콘크리트	1동 / 지상 5층	608.61	하우포	강남구 역삼동 713-7 개나리APT 31동 603호	지상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7		
	2	인현동1가 136-17	대	62.8	62.8	대	일반상업지역 종신푼지관리지구	하우포	강남구 역삼동 713-7 개나리APT 31동 603호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창신동지점)		
사용	계			2,728.0	1,397.3														
사용	3	인현동1가 138-3	대	41.9	41.9	대	일반상업지역 종신푼지관리지구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제2층 근방 철근콘크리트	1동 / 지상 4층 지하 1층	162.00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구분지상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7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화곡동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은행	서울 강남구 화동로 103 (논현동)		
사용	4	인현동1가 138-6	대	20.9	20.9	대	일반상업지역 종신푼지관리지구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구분지상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7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화곡동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은행	서울 강남구 화동로 103 (논현동)		
사용	5	인현동1가 137	대	126.8	126.8	대	일반상업지역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영업용, 기타 / 목조	1동 / 지상 2층	244.63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화곡동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은행	서울 강남구 화동로 103 (논현동)		
사용	6	인현동1가 137-1	대	64.9	64.9	대	일반상업지역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화곡동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은행	서울 강남구 화동로 103 (논현동)		
사용	7	인현동1가 134-2	대	133.4	133.4	대	일반상업지역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영업 / 목조	1동 / 지상 2층	194.24	주식회사 에이치루 디앤아이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52, 603-1(장안동, 경남빌딩)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화곡동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은행	서울 강남구 화동로 103 (논현동)		

[illegible]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 - 110호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42호(2009.12.3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1-67호(2011.10.27)로 정비계획·구역지정 (경미한)변경, 중구고시 제2015-40호(2015.6.3)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2-12호(2012.2.3)로 사업시행인가, 중구고시 제2015-68호(2015.8.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의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항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정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1,392.60㎡(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배종일
 -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2-1, 2층(중림동 328-1)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변경없음)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5. 8. 20.(변경없음)
- 주요 사업 현황
 - 건립세대 : 199세대(변경없음)

주택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95초과	85이하	72이하
	분 양	공동주택(아파트)	4	199	2	139	58

나. 건축계획(주택의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 포함)[오기 정정]

구 분	대지면적 (㎡)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높이 (m)	층 수	전용면적별 주택건설계획			비 고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	
택지	9,614.00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6.62	223.67	40.2	지상14층/ 지하2층	71	71,983	58	분양
							84A	84,977	101	
							84B	84,972	36	
							84C (T)	84,984	2	
							95(T)	95,963	2	
							계	16,178.658	199	

7.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참조

가. 무상귀속(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 고
		토 지	건축물	
정비기반 시설	도 로	1,305.50	-	시설 설치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소공원	428.00	-	〃
	체육공원	45.10	-	〃
총 계		1,778.60		

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무상양도 정비구역(정비계획)에 부합토록 표기]

시설별	관리 청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저촉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공유토지	비 고
		면 적(㎡)	면 적(㎡)	
공원	서울시	31.00		교환필지 45.1㎡
도로	국토 교통부	59.50		
도로	중구청	832.10	414.80	사업시행자에게 무 상 양 도 414.80㎡
합 계		922.60	414.80	

8.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33) 및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65-2480)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변경없음)

[별지제18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축 국·공유토지명세서

연번	시설	관리 청별	저축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공유토지				비 고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이용	감 정 평가액	도면 번호	면적 (㎡)	감 정 평가액	도면 번호	
					1필지 공부상	구역편입	정비기반 시설편입							
1	공원	서울시	6 - 9	공원	11.90	11.90	5.60	5.60	14,229,600	2				교환필지 (45.1㎡)
2	공원	서울시	6 - 10	공원	10.90	10.90	7.50	7.50	19,057,500	4				
3	공원	서울시	6 - 11	공원	22.30	22.30	17.90	17.90	45,483,900	6				
4	도로	중구청	12 - 70	도로	2.60	2.60	2.60	2.60	10,042,500	14				
5	도로	중구청	12 - 71	도로	177.60	177.60	177.60	177.60	685,980,000	15				
6	도로	중구청	12 - 74	도로	162.40	162.40	162.40	162.40	627,270,000	16				
7	도로	중구청	12 - 81	도로	0.60	0.60	0.60	0.60	2,317,500	18				
8	도로	중구청	32 - 11	도로	75.10	75.10	74.10	74.10	418,929,050	19				
9	도로	중구청	32 - 12	도로	415.80	415.80	414.80	414.80	2,154,793,300	21	414.80	2,154,793,300		
10	도로	국토 교통부	12 - 61	도로	59.50	59.50	59.50	59.50	332,069,500	13				
		합 계					922.60	922.60	4,310,172,850		414.80	2,154,793,30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구분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구역내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					
	새로운 시설명	면적(㎡)			감정평가 금액(원)	기존 시설명	면적(㎡)			감정평가 금액(원)	
공부상		구역편입	정비기반시설 편입	공부상			구역편입	정비기반시설 편입			
사유지	사업 계획 결정 도면 및 공헌	5,445.90	1,415.00	1,415.00	8,674,713,250	원형 도로 및 공원					
서울특별시							45.10	45.10	31.00	(45.10㎡ 대토부지)	
중구청		1,159.90	363.60	363.60	1,903,490,950		415.80	414.80	414.80	2,154,793,300	
국도해일부							-	-	-	-	
합계		6,605.80	1,778.60	1,778.60	10,578,204,200				2,154,793,300		
건축물보상비	952,554,480 원										
설치비용	505,950,000 원										
양적률 인센티브 적용 금액	8,868,020,236원 (인센티브 적용면적 환산표 참조)										
신출내역	①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 12,036,708,680 원 = 10,578,204,200 원(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대지 감정평가금액) + 952,554,480 원(건축물 보상비 감정평가금액) + 505,950,000 원(정비기반시설 설치비 감정평가금액)										
	②용도폐지되는 구역내 정비기반 시설 중 무상양도 요청 금액 = 2,154,793,300원										
	③인센티브 환산금액 = 8,868,020,236원										
①무상귀속 재산총액		12,036,708,680 원									
②무상양도 재산총액		2,154,793,300 원								실제 무상양도 대상금액 ① - ③ 조합부담 ② - (① - ③)	3,168,688,444 원
③용적률 인센티브 환산 금액		8,868,020,236 원								근거	②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액 - (①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액 - ③용적률 인센티브 평가액)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 금액(고려/대일감정평가법인)
*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재산의 평가는 대지로 평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880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12.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3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현황 (정원)	비 고
		대지	면적		
충무 어린이집	중구 동호로27길 21	237.6㎡	340.63㎡	67명	시간연장
을지 어린이집	중구 을지로27가길 24	281㎡	531.84㎡	52명	시간연장 시간제보육
남산타운 어린이집	중구 다산로 32	577㎡	220.63㎡	35명	영아반운영

2.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가. 법인 또는 단체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4. 신청 제외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마.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5. 12. 23.(수) ~ 2016. 1. 12.(화)

나. 접수기간 : 2016. 1. 6.(수) ~ 2016. 1. 12.(화) 18:00까지

다. 접수장소 : 중구청 여성가족과 (본관 1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토요일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마.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 별 사 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주민등록등본			○
공 통 사 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부채증명(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등 - 열린어린이집운영계획, 특별활동운영,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등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바. 제출 부수 :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18부 (원본 1부, 사본 17부), 요약서(3~5페이지 분량)

※ 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6. 사업설명회 : 생략

※ 구청방문시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

7. 위탁조건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시간연장 · 다문화아동)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마.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심사일은 별도 통지)

나. 심사항목 : 5개 분야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 「2015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 참고

다. 면접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PPT발표)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라. 결과발표 :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다.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에 공고문과 게재 함

사. 위탁신청서류 제출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02-3396-5412)로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881 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제5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 월 일

중 구 청 장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공고한 날부터 30일간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16년~’20년)
4. 접 수 처 : 중구청(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3396-6123~4)
5. 신청요령
 - 가.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중구)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 하며,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16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본 공고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3396-6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4.10.10.>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 <http://hidig.seoul.go.kr>)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 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 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대책
4. 안전사고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6년~20년 장기 도로굴착사업 현황계획

□기관명: ○○사업소

연번	굴착공사명	원인자	도로굴착 년월및굴착일수			굴착규모			도로굴착 예정구간								
			년도	월	일수	폭(m)	연장(m)	연장(m ³)	도로 종류	시점				총 점			
										구명	도로명	번지	호	구명	도로명	번지	호
1	상수도 개량공사	○○수도 사업소	2016	4	20	2	10	20	시도차도	○○구	○○로	10		○○구	○○로	20	
2	하수도 개량공사	○○구청 하수과	2016	5	10	1.2	20	24	시도보도	○○구	○○로	10		○○구	○○로	20	
3	도시가스관 신설공사	○○도시 가스(주)	2016	8	5	1.2	30	36	구도차도	○○구	○○길	10	2	○○구	○○길	20	2
4	○○통신관로 신설공사	○○○(주)	2016	10	3	1.2	40	48	구도보도	○○구	○○길	10	3	○○구	○○길	20	3
5	상수도 개량공사	○○수도 사업소	2016	4	20	2	50	100	시도차도	○○구	○○로	10	4	○○구	○○로	20	4
6	하수도 개량공사	○○구청 하수과	2016	5	10	1.2	60	72	시도보도	○○구	○○로	10	5	○○구	○○로	20	5
7	도시가스관 신설공사	○○도시 가스(주)	2017	8	5	1.2	70	84	구도차도	○○구	○○길	10	6	○○구	○○길	20	6
8	하수도 개량공사	○○구청 하수과	2018	5	10	1.2	80	96	시도보도	○○구	○○로	10	7	○○구	○○로	20	7
9	도시가스관 신설공사	○○도시 가스(주)	2020	8	5	1.2	90	108	구도차도	○○구	○○길	10	8	○○구	○○길	20	8

위 치 도			
연번	1	위치	○○로 1 ~ ○○로 2
연번	2	위치	○○로 1 ~ ○○로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889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예 고 명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

2. 목 적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5. 12. 24(목) ~ 2016. 1. 12.(화) / 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예고 기간 내에 아래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6. 1. 12.(화)까지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 주 소 : (우)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6층

- 전 화 : 02)3396-5803

- 팩 스 : 02)3396-8786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인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정함.

다. 기 타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89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 제4조)

- 적정성심사, 지원연장·결정,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복지지원과장, 전화 : 3396-5316, FAX : 3396-8723, E-mail : wjs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상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가 있으며 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